경영관리규정

제정 2019. 11. 29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경영목표, 경영계획, 경영평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진흥원의 경영목표 및 경영계획 수립, 경영평가 등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- 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'경영평가'란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8조에 의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해 정부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.
 - 2. '전략담당부서장'이란 직제규정 제4조 제1호의 하부조직 중 직제규정 별표 제2호의 '기관 경영 전략 수립 및 이행'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 - 3. '예산담당부서장'이란 직제규정 제4조 제1호의 하부조직 중 직제규정 별표 제2호의 '사업계획 및 예·결산관리'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 - 4. '인사담당부서장'이란 직제규정 제4조 제1호의 하부조직 중 직제규정 별표 제2호의 '인사관리'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 - 5. '평가담당부서장'이란 직제규정 제4조 제1호의 하부조직 중 직제규정 별표 제2호의 '기관 성과 관리 및 대내외 기관평가 대응'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
제2장 경영목표

- 제4조(경영목표의 수립) ① 진흥원은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6조와 정관 제25조에 따라 사업내용과 경영환경, 원장이 체결한 경영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주무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거나,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주무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수립 기준) ① 중장기 경영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그 간의 경영실적 및 향후 경영환경의 분석
 - 2. 기관의 미션, 비전과 핵심가치의 정의
 - 3. 중장기 경영목표의 추진전략 및 경영전략 체계

- 4. 기타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라 경영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목표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
 - 2. 분야별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
 - 3. 정부정책 방향과의 정합성
 - 4.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
- **제6조(수립 절차)** ① 전략담당부서장은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경영목표 작성기준을 직제규정 제4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부서(이하 "본부"라 한다)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.
 - ② 각 본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소관사업 및 업무에 대하여 목표지표와 달성계획을 작성하여 전략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.
 - ③ 전략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각 본부의 장이 제출한 본부별 목표지표와 달성계획을 종합 조정·보완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고, 이를 각 본부에 통보한다. 이 경우 중장기 경영목표에 대해 미리각 본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경영계획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 자문기구의 의견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3장 경영계획

- 제7조(경영계획의 수립) ① 전략담당부서장은 중장기 경영목표 등을 토대로 경영환경 및 내부역량과 과거 실적의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.
 - 1.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·집행과 관련한 사항
 - 2. 조직·인력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
 - 3. 경영혁신과 관련한 사항
- 제8조(사업계획) ①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정관 제32조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예산담당부서장은 차년도 사업 및 예산운영 계획 작성기준을 본부별 하부조직에 송부할 수 있다.
 - ② 본부별 하부조직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차년도 사업 및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며, 예산담당부서장은 제출된 부문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영목표, 환경, 과년도 사업실적 등을 토대로 검토·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.
 -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.
 - 1. 사업의 목적, 추진근거 및 주요내용을 포함한 사업개요
 - 2. 사업 추진절차, 추진체계, 실행예산 및 성과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
 - ④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절차 및 운영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9조(조직운영계획) ①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, 전략담당부서장은 기관이 직면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목표의 실행력 증대를 위하여 조직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 - ② 조직운영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.
 - 1. 직제규칙 제4조에 따른 조직의 정원 및 중장기 운영계획

- 2. 기관의 증원 및 기능조정 등을 반영한 조직 개편 계획
- ③ 전략담당부서장은 경영여건상 필요한 경우,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직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단, 정원을 조정할 경우 전략담당부서장은 미리 해당 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원을 기준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원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략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조직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절차 및 운영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0조(경영혁신계획) ①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정관 제24조의 내용에 따라 전략담당부서장은 매년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해 전략담당부서장은 경영혁신계획의 작성기준을 각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.
 -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부문별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전략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며, 전략담당부서장은 제출된 부문별 혁신계획을 검토·조정하여 경영혁신계획을 작성한다.
 - ③ 경영혁신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.
 - 1.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운영 등 국민소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
 - 2. 사업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신사업 발굴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 방안
 - ④ 혁신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절차 및 운영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장 경영평가

- 제11조(실적 등의 제출) 평가담당부서장은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7조 및 정관 제26조에 따라 매년 3월 20일 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실적보고서(이하 "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평가지표와 실적관리) ① 보고서 작성 시에 사용하는 경영평가 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 지표로 구분하며, 그 기준 및 설정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평가담당부서장은 기획재정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기관의 사업내용, 특성,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지표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이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평가담당부서장은 경영평가의 능률적인 시행과 평가결과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지표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의한 지표별 담당부서의 장은 지표별 해당업무를 주관하여 당년도 경영평가를 위한 지표별 경영실적을 작성하고,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⑤ 평가기능의 일원화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평가와 경영평가를 연계하여 운영하되, 세부 연계방법 및 조직평가의 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**제13조(경영평가 대응 결과조치)** ① 경영평가는 정부 경영평가단의 계획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에서 준비하며 전 부서장과 지표별 담당부서 등이 평가에 대응한다.
 - ② 정부 경영평가단으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해당 지표의 담당부서는 평가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요구사항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- ③ 평가담당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이 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표별 담당부서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원장은 평가결과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부서나 유공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.

제6장 경영전략위원회

- 제14조(위원회의 설치) 진흥원은 정관 제21조에 따라 경영목표, 경영계획, 경영평가 등에 관한 기관 장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경영전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5조(구성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- 1. 위원장 : 직제규정 제4조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장
 - 2. 위원 : 직제규정 제3조에 따른 부서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, 구성된 위원 중 여성이 없는 경우 여성 부서장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에 추가할 수 있다.
 - 3. 간사: 전략담당부서장
- 제16조(권한 및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심의·의결권을 가지며, 기타 원내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자문과 제안을 할 수 있다.
 - 1.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한 사항
 - 2.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·집행과 관련한 사항
 - 3. 조직·인력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
 - 4. 경영혁신과 관련한 사항
 - 5. 경영실적 보고서의 작성 및 경영평가 결과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
 - 6. 기타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제17조(심의 요청) 제16조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부서는 당해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한다.
 - ② 별도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보고, 제안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 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은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 - 1.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
 - 2. 그 밖의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
 - ④ 위원회는 심의 또는 회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간사는 심의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제안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.

제7장 국민참여 자문기구

- 제19조(자문기구의 설치) 진흥원은 정관 제21조에 따라 주요 경영현안에 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국민 전반의 의견 수렴을 위해 '국민참여 자문기구(이하 "자문기구"라 한다)'를 두어 활용한다.
- 제20조(구성 및 모집) ① 자문기구는 학계·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'고객정책자문단'과 지역민, 학생·청년 등의 일반인으로 구성된 '혁신참여단'으로 구분하여 총 100명 범위의 자문위원을 운영하다.
 - ② 자문기구 중 '혁신참여단'은 공개모집으로, '고객정책자문단'은 각 본부의 추천으로 매년 모집한다.
 -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자문기구의 구성 및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21조(역할 및 운영) ①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또는 국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안 및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.
 - 1.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
 - 2. 기관 경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
 - 3. 경영실적 보고서의 작성
 - 4. 경영전략위원회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
 - 5. 기타 경영현안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- ② 자문기구의 자문 또는 의견 제안이 필요한 부서는 안건에 따라 필요한 수의 자문위원을 전략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전략담당부서장은 안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을 배정 한다.
 - ③ 자문 또는 의견 제안은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와 보상 등 세부 운영방안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수립된 해당 계획은 이 규정에 의하여 수립 시행된 것으로 본다.